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 → 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평법 시행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③ 고액·상습채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채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경선 (044-202-7064)
		담당자	사무관	김서원 (044-202-7068)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044-202-7476)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	책임자	과 장	장중서 (044-202-7962)
		담당자	사무관	전연진 (044-202-7477)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책임자	과 장	오은경 (044-202-7347)
		담당자	서기관	김용주 (044-202-7352)
		담당자	사무관	조일한 (044-202-7373)

# 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 [1~3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월~ ] 160만원

	현행	개선
<b>급여</b>	월 최대 150만원	월 최대 250만원
<b>지급방식</b>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b>부모 함께 육아휴직제</b> <small>(생후 18개월 이내 사용)</small>	첫 1개월 최대 2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첫 1개월 최대 250만원 (월 최대 250~450만원)
<b>한부모 특례</b>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현행	개선
<b>신청방식</b>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b>사업주 허용절차</b>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small>[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small>

## 중소기업 지원 확대

	현행	개선
<b>대체인력 지원금</b>	월 최대 80만원 <small>(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small>	월 최대 120만원 <small>(육아휴직도 포함)</small>
<b>업무분담 지원금</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	육아휴직도 포함